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60
----------	-------

발의연월일 : 2021. 10. 26.

발 의 자 : 송언석 · 곽상도 · 구자근
金炳旭 · 김성원 · 김영식
김용관 · 박덕흠 · 안병길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대표되는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짓표시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과태료 처분 등에 지나지 않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 건수는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해서 그 처분 수위를 높여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 차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8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이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제5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①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 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2. (생략) <u><신설></u>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u>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이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제 5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u>
② ~ ⑤ (생략) 제18조(과태료) <u><신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① <u>제5조제1항·제 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 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u>	② ----- ----- ----- ----- <u><삭제></u>

<u>한 자</u> 2. ~ 5. (생 략) ② (생 략) ③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부과·징수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	---